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 - 9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던 사항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2. 주요내용

-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제10조 관련) 기간 연장

- [별표 2] 의 2. 매입면제 대상에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

○ 부칙 : [안 별표 2]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 (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 다.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 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 ○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업·농어촌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5년12월31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	“자”목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허가 (「지방세법」 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 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지방공기업법 ○ 제19조 (지방채 등) 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3항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채권 면제사항으로 제반비용 미 발생

4.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영 훈 의원